

(유권해석) 장기간 휴경 중인 토지는 영농보상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2008. 12. 11. 토지정책과-1338]

질의요지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하여 주차장이나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농업손실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77조제2항에서 영농보상을 실제 경작자에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점과 영농 보상은 농업의 손실을 전보하는 제도로서 보상인 점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지가 아닌 휴경지 등 장기간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농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농업에 어떠한 손실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영농손실 보상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